

의안번호	2210086
의 퇴 인	허종식의원
회 답 일	2025. 8. 13.
추 계 번호	25B2495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8조의9(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)	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등록, 매매, 수출(신조차와 이륜자동차의 수출은 제외한다), 검사, 정비, 부품유통, 전시 및 홍보 등 자동차 관련 시설과 상업·문화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·육성하기 위한 자동차관련서비스산업복합단지(이하 “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”라 한다)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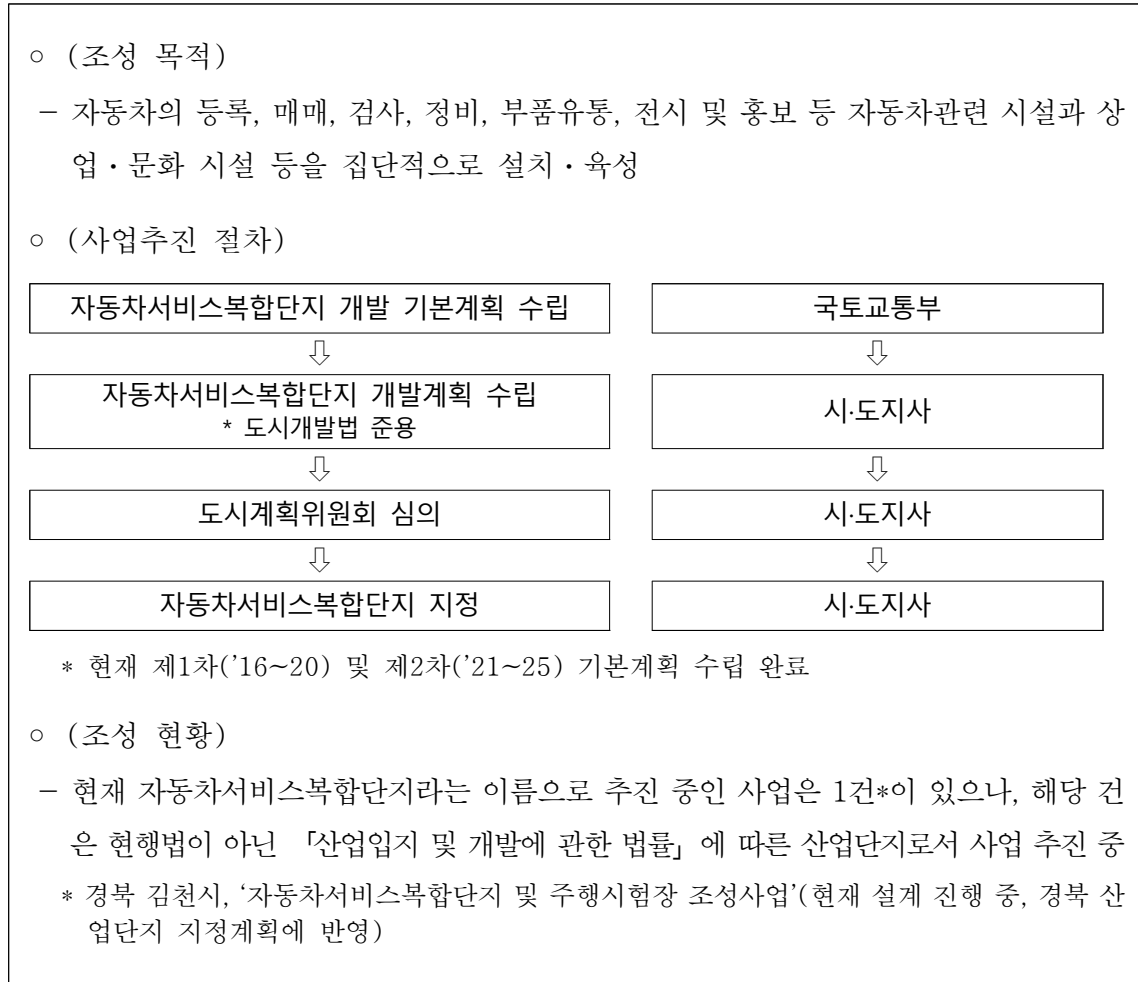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8조의9(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개발 목적에 ‘중고자동차 수출’을 포함(안 제68조의9)

- 현행법¹⁾은 국토교통부장관은 ‘자동차의 등록, 매매, 검사, 정비, 부품유통, 전시 및 홍보 등’ 자동차 관련 시설과 상업·문화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·육성하기 위한 자동차관련서비스산업복합단지(이하 “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”)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해당 기본계획을 토대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

[표 1]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요



- 개정안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개발 목적에 ‘중고자동차 수출²⁾’을 위한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의 집단적 설치·육성을 추가함으로써 중고자동차 수출을 위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- 국가·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³⁾하거나, 「도시개발법」을 준용하여 보조 또는 융자 및 조세·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⁴⁾을 할 수 있으므로, 개정안에 따라 중고자동차 수출을 위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2) 안 제68조의9(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등록, 매매, 수출(신조차와 이륜자동차의 수출은 제외한다), 검사, 정비, 부품유통, 전시 및 홍보 등 자동차 관련 시설과 상업·문화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·육성하기 위한 자동차관련서비스산업복합단지(이하 “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”라 한다)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- 3) 제68조의11(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) 「도시개발법」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.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
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 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
 4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
 5.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대상지역의 토지소유자(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, 「도시개발법」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)
 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
- 4) 제68조의10(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 및 개발) ③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, 공사완료의 공고 및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·허가 등의 의제에 관하여는 「도시개발법」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를,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비용부담, 보조 또는 융자 및 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에 관하여는 「도시개발법」 제54조, 제59조 및 제71조를,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건설을 위한 타인 토지의 출입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「도시개발법」 제64조 및 제65조를,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개발 부지에 있는 국공유지의 처분제한과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대하여는 「도시개발법」 제66조 및 제68조를,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「도시개발법」 제75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도시개발구역”은 “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”로, “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”은 “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계획”으로, “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”은 “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실시계획”으로, “도시개발사업 시행”은 “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사업시행”으로 각각 본다.

* 「도시개발법」 제54조(비용 부담의 원칙)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한다.

제59조(보조 또는 융자)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 다만, 시행자가 행정청이면 전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
제71조(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 등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「농지법」, 「산지관리법」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, 농지보전부담금, 대채산립자원조성비 등을 감면할 수 있다.

-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중고차 수출을 위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개발 내용 및 규모,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식 및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, 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